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합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다.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빈집 정비 대상, 지원 대상 등 규정 (안 제6조, 제7조)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서식에 따라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의회 의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231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930-3608 FAX : 930-3619)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합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ccl.go.kr>)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합천군의회회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 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